

【문】 30여두 규모의 젖소와 그에 맞는 초지를 갖추고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 제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초지상속에 관한 공제 규정은 현행 상속세법 제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을 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초지에 더하여 농지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설명도 이에 맞게 해드릴까 합니다.

1. 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①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

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잠면 및 소재불징수의 경우도 포함됨)

③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도 포함)

2. 피상속인

초지, 농지, 또는 산림지의 피상속인은 초지, 농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직할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주소지의 인접지역(통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축산업(농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상속공제액의 한도

초지·농지·산림지의 공제액은 다음의 공제액을 합하여 7천만원의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① 상속세 기초공제액 1천만원
- ② 상속세 인적공제액 ③ 주택상속 공제액

4. 상속공제의 배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다음의 증여재산가액 중 위1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5. 상속세의 추징

위1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축산업(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 ② 양축(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할·대토의 경우.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④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양축(영농)에 공할 수 없는 경우

● 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초지 등이 초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축산업(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당해 상속가액 공제재산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